■ 세무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7. 3. 10.>

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(www.q-net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응 시 원 서

※ 응시번호	

응시자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	사진 (3.5㎝×4.5㎝)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등록
	③ 주 소	(전화:)			
④ 근 무 처					
⑤ 응시지역			⑥ 제1차시험 선택과목	[ ] 상법 [ ] 민법 [ ] 행정소송법	

⑦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구분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구분	제1차 면 제	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4항 해당자(직전회 제1차 시험 합격자) 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) 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(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) 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(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) 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(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)
	제 2 차 일부면제	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) [ ]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)
	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	[ ] 기제출(년도 제 회 시험) [ ] 미제출
	※ 첨부서류: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(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로 한정합니다) ※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2차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

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응시인: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절 취 선

제 회

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

※응시번호	

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-	사진 (3.5㎝×4.5㎝)

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

※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응시자 주의사항

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(3.5㎝×4.5㎝, 여권용 사진)이어야 하며, 인터넷(www.Q-net.or.kr/site/semu)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스캔한 사진(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)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(주민등록증 · 운전면허증 · 공무원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, 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)을 지참해야 합니다.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발급받아야 하며,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④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놓아두어야 하며,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⑤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며,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적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⑥ 제1차 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(일반 사인펜, 칼라펜,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),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,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. 제2차 시험 답안지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, 과목별로 동일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⑦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, 공학용 · 재무용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.

⑧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「세무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